# 이용자 부담의 경감

## ●고액개호(개호예방) 서비스비용

개호보험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10% 또는 20%는 이용자가 부담하지만, 그 이용자 부담이 일정한 상한액 (※하기 참조) 을 초과한 경우에는 거주자 구청의 개호보험창구에 신청함으로써 **고액 개호 (개호예방) 서비스 비용**으로서 지급됩니다. 또한 구청의 개호보험 창구에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회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1개월에 일정한 상한액(※하기참조)을 초과한 이용자 부담이 발생한 달에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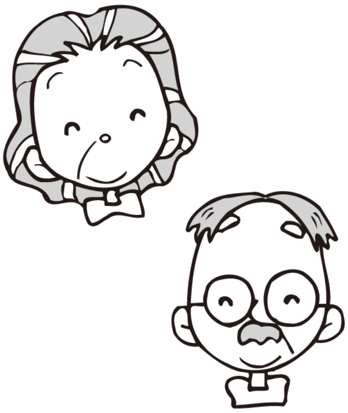

■고액개호(개호예방) 서비스비용의 이용자 부담 등급과 이용자 부담 상한액(1개월당)

| 이용자 부담 등급 구분 | | 상한액 |
|---|---|---|
| 일반 세대 | | 37,200엔 |
|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| | 24,600엔 |
| | ●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80만엔 이하인 분<br>●노령복지연금 수급자 | 15,000엔<br>(개인) |
| 생활보호 수급자 | | 15,000엔<br>(개인) |

2015년 8월부터

| 이용자 부담 등급 구분 | 상한액 |
|---|---|
| 현역 수준의 소득자<br>과세 소득이 145만엔 이상인 제1호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분으로, 제1호 피보험자의 수입이 383만엔 (2명 이상인 경우는 520만엔)이상인 분 | 44,400엔 |
| 일반 세대 | 37,200엔 |

○2015년 8월부터 이용자 부담 등급 구분에 「현역 수준의 소득자」가 신설됩니다.
또한, 등급 구분에서 「현역 수준의 소득자」인 분으로서 일정한 수입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신청함으로써 「일반 세대」의 등급 구분에 해당됩니다.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오사카시에서 신청 권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## ●고액의료합산개호(개호예방) 서비스비용

각 의료보험〔국민건강보험, 피용자보험, 후기고령자 의료제도〕에서는 동일 세대에서 1년간의 개호보험과 의료보험의 서비스 이용에 소요된 이용자 부담의 합계가 일정한 상한액(※하기 참조)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**고액의료합산개호(개호예방) 서비스비용**〔의료보험에서는 **고액개호 합산요양비**라고 합니다〕이 지급됩니다.

■고액의료합산개호(개호예방) 서비스비용의 세대 부담 등급과 세대 부담 상한액(2014년 8월~2015년 7월 1년간)

70세 미만인 분이 있는 세대

| 소득 구분 | 한도액 |
|---|---|
| 기초 공제한 후의 소득이<br>901만엔 초과 | 176만엔 |
| 기초 공제한 후의 소득이<br>600만엔 초과~901만엔 이하 | 135만엔 |
| 기초 공제한 후의 소득이<br>210만엔 초과~600만엔 이하 | 67만엔 |
| 기초 공제한 후의 소득이<br>210만엔 이하 | 63만엔 |
| 시정촌민세의 비과세 | 34만엔 |

70세 이상인 분이 있는 세대

| 소득 구분 | 한도액 |
|---|---|
| 과세소득 145만엔 이상 | 67만엔 |
| 과세소득 145만엔 미만 | 56만엔 |
| 시정촌민세의 비과세 | 31만엔 |
| 시정촌민세의 비과세<br>(일정 소득 이하) | 19만엔 |

※구분 및 신청 방법은 각 의료보험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하신 의료보험 창구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●의료보험과 개호보험 양쪽에 이용자 부담이 있는 세대가 대상입니다.
●계산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의 12개월간입니다.